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52

발의연월일: 2025. 1. 31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김용만 · 박홍근

이해식 • 박용갑 • 한민수

김주영 · 박희승 · 이연희

임광현 · 염태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행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, 경제적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있음.

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

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"청구인"을 "청구인(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국선대리인) ① <u>청구인</u>	제18조의2(국선대리인) ① <u>청구인</u>
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	(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를
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	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	<u>다)</u>
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